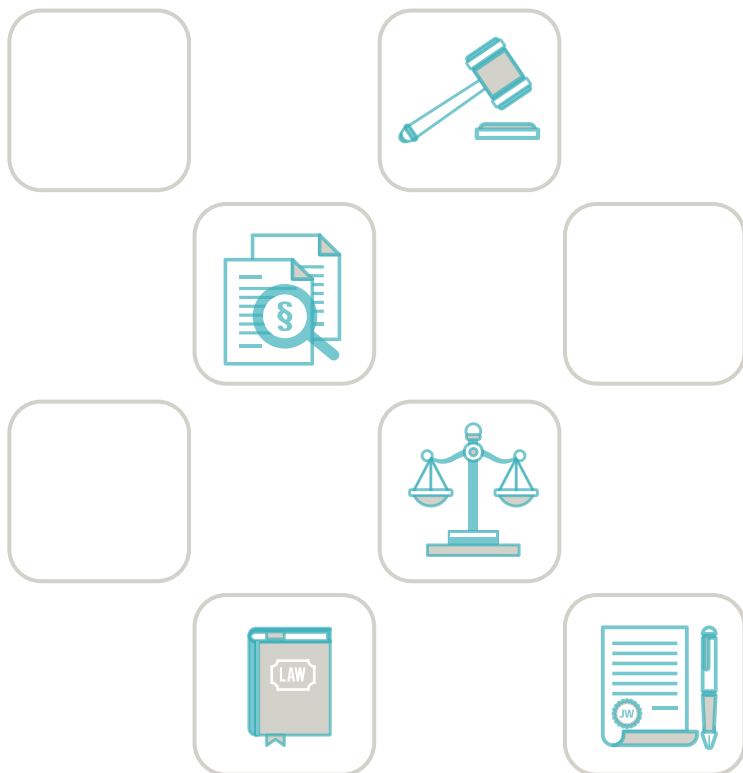


2019 ~ 2021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전라남도

목 차

제1장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1. 도입 배경	6
2. 관련 법규	6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3. 대상 업무	6
- 적극행정 지원사무	
- 법령 등 해석사무	
-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처리 절차	6
5. 적극행정 면책과 연계	6
6.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	7
- 연도별 처리 현황(2015년~2022년 6월 말)	
- 기관별 신청 현황(전라남도, 22개 시·군)	
7.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8
- 분야별 수록 사례(60건)	
- 분야별 수록 사례 목록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60건)

1. 개발행위 분야(4건)	12
2. 인허가 분야(19건)	21
- 건축 분야(8건)	21
- 기타 분야(11건)	37
3. 일반행정 분야(11건)	59
- 일반행정 분야(6건)	59
- 보조금 분야(5건)	69
4. 회계 분야(26건)	80
- 계약 분야(14건)	80
- 공유재산 분야(8건)	107
- 재정 분야(2건)	124
- 기타 분야(2건)	128

2019년~2021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제 1 장

1. 도입배경
 2. 관련 법규
 3. 대상 업무
 4. 처리 절차
 5. 적극행정 면책과 연계
 6.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
 7.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
- 

제1장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1. 도입 배경

- 일선 행정 현장의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완화에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업무 처리 사례 발생
-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업무 처리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법 제시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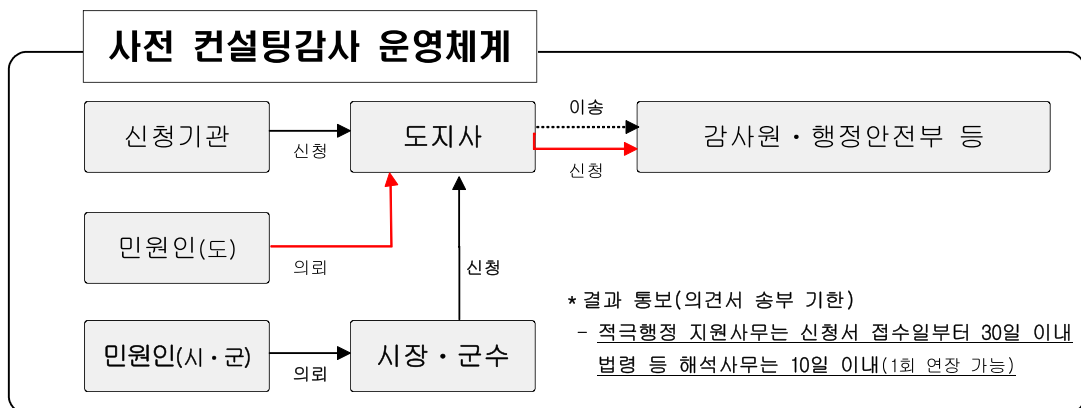
2.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 훈령 제811호, 시행 2022. 3. 21. 행정안전부(감사담당관)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훈령 제1422호, 시행 2019. 9. 19. 전라남도(감사관실)

3. 대상 업무

- 적극행정 지원사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사무
- 법령 등 해석사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사무
-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처리 절차



5. 적극행정 면책과 연계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사적인 이해관계 등)가 없으면 면책 기준 충족으로 인정

6.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

○ 연도별 처리 현황(2015년~2022년 6월 말)

연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말
건수	580	10	52	87	83	118	93	86	51

○ 기관별 신청 현황(전라남도, 22개 시·군)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10	3	7	52	29	23	87	39	48	83	27	56	118	61	57	93	60	33	86	61	25
도	3	1	2	5	3	2	6	4	2	3	1	2	22	14	8	20	17	3	9	8	1
목포시	0	-	-	3	3	-	1	1	-	4	-	4	3	1	2	4	2	2	4	3	1
여수시	2	-	2	2	-	2	7	3	4	6	2	4	9	2	7	7	3	4	6	5	1
순천시	0	-	-	0	-	-	2	2	-	4	3	1	5	3	2	6	2	4	4	3	1
나주시	0	-	-	4	1	3	3	-	3	4	1	3	5	2	3	6	4	2	5	2	3
광양시	0	-	-	2	2	-	3	1	2	4	1	3	8	5	3	6	4	2	4	4	-
담양군	0	-	-	0	-	-	5	-	5	3	-	3	2		2	3	-	3	3	1	2
곡성군	1	-	1	1	-	1	2	2	-	2	1	1	2	1	1	2	2	-	-	-	-
구례군	0	-	-	0	-	-	1	1	-	1	1	-	4	4		3	3	-	4	2	2
고흥군	0	-	-	4	-	4	2	1	1	4	-	4	5	4	1	1	1	-	-	-	-
보성군	0	-	-	3	3	-	4	4	-	6	1	5	5	2	3	4	2	2	-	-	-
화순군	0	-	-	1	-	1	1	1	-	3	2	1	4	1	3	3	2	1	3	3	-
장흥군	1	1	-	1	-	1	7	5	2	3	2	1	6	4	2	3	2	1	13	9	4
강진군	0	-	-	3	3	-	4	2	2	1	1	-	6	4	2	4	3	1	3	2	1
해남군	0	-	-	1	1	-	3	2	1	3	-	3	1	1		3	2	1	2	2	-
영암군	2	1	1	5	5	-	5	3	2	3	1	2	2		2	1	-	1	3	1	2
무안군	0	-	-	3	-	3	2	-	2	5	3	2	2	1	1	2	2	-	4	2	2
함평군	0	-	-	3	2	1	5	1	4	7	1	6	5	1	4	3	2	1	6	5	1
영광군	0	-	-	4	1	3	3	1	2	4	1	3	6	1	5	1	-	1	4	2	2
장성군	1	-	1	1	-	1	7	3	4	4	2	2	6	2	4	3	3	-	3	2	1
완도군	0	-	-	1	1	-	9	1	8	4	2	2	5	4	1	3	1	2	1	1	-
진도군	0	-	-	0	-	-	5	1	4	4	-	4	3	2	1	2	-	2	3	2	1
신안군	0	-	-	5	4	1	0	-	-	1	1	-	2	2		3	3	-	2	2	-

7.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

○ 분야별 수록 사례(60건)

구 분	합계	개발행위	인허가		일반행정		회계			
			건축	기타	일반	보조금	계약	공유재산	재정	기타
건수	60	4	8	11	6	5	14	8	2	2

○ 분야별 수록 사례 목록

연번	분야		제목	쪽 번호
합계	60건(개발행위 4, 인허가 19, 일반행정 12, 회계 25)			
1	개발행위 (4)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 규모 산정 방법	12
2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농업용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14
3			농업경영체의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절차	17
4			개발행위 위반사항 시정명령 가능 여부	19
5	인허가 (19)	건축 (8)	바닥의 단차 있는 충고 산정 방법	21
6			건축허가 부지 내 현황도로의 법정도로 인정 가능 여부	23
7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26
8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예외 규정 적용 가능 여부	28
9			공사현장 내 임시숙소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여부	30
10			건축물 외부공간간의 바닥면적 산입 가능 여부	32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 여부	34
12			사용검사 완료된 대지조성사업 타용도 변경 가능 여부	36
13		기타 (11)	마을회관 불법 농지전용 양성화 가능 여부	37
1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형시설 설치 가능 여부	39
15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입목축적) 적용 관련	41
16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및 사무위임 가능 여부	43
17			■/■ ■■■■■ 개발구역 내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	46
18			토석채취 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48
19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능 여부	50
20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	52
21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 고시 해지 절차 없이 인허가 가능 여부	54
22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지 신규 허가 방법	55
23			일반산업단지 분양권 전매 및 대물변제 용지 처분 가능 여부	57
24	일반행정 (11)	일반행정 (6)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59
25			침수피해 복구에 자활기금 활용 가능 여부	61
26			처분제한 산업용지 처분 시 양도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63
27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인 면허취소 처분 유예 가능 여부	65
28			농어촌도로 점유취득 가능 여부	66
29			●●●● 사업구역 내 집단 무연분묘 산골(散骨) 처리 가능 여부	68
30		보조금 (5)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계약방법	69
31			소규모 사업장 방주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72
32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취소 수수료 지원 가능 여부	74
33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76
34			보조사업 잔여 공사비 사용 관련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	78

연번	분야	제목	쪽 번호
35	회계 (26)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80
36		●●●●●●●● 조성사업 경관조명 설치공사 위탁 가능 여부	82
37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공구 분할발주 가능 여부	84
38		●●사랑상품권카드 업무대행 협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 가능 여부	86
39		상수도관 이설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88
40		토목공사에 수목 식재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90
41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92
42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과업변경 가능 여부	94
43		운동기구 물품 임차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97
44		◆◆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사업 종자구입 관련	99
45		0000●●●●●●●● 취소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가능 여부	101
46		수산물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방식 추진 가능 여부	103
47		체육시설 건설사업 2건 관리용역계약 통합 가능 여부	105
48		물 관련 시설 건설사업 2건 관리용역계약 통합 가능 여부	106
49		●●어촌계 가설건축물 부지 어항시설 지정 가능 여부	107
50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료 산정 방법	109
51		■●●지구 도시개발사업 발파암 판매 가능 여부	111
52		농기계종합교육장 부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처리	113
53		공유재산 대부(경작)관련 시설물 보상 가능 여부	115
54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가능 여부	117
55		■●개발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 관련	119
56		재난피해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 연장 가능 여부	122
57		●●●●●●시설 조성사업 손해배상액 분할징수 가능 여부	124
58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후 세외수입 처리 가능 여부	126
59		●●●면 ●●●●●●●●●●사업으로 매입 예정인 정부양곡창고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가능 여부	128
60		◆◆◆◆◆ 협의 취득 전 폐업된 상점의 영업보상 가능 여부	130

2019년~2021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제2장

1. 개발행위 분야(4건)
 2. 인허가 분야(19건)
 3. 일반행정 분야(11건)
 4. 회계 분야(26건)
- 

제2장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60건)

1. 분야 : 개발행위 분야(신청일 : 2019. 8. 30.)

□ **제목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 규모 산정 방법**

□ **사업 개요**

- 위치 : △△시 ○○면 ●●리 000-0번지 외 00필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신청면적 : 000,000㎡
- 개발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 **신청 사유**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에 준공 후 분할을 전제로 다수인이 연접하여 허가를 받아 개발 도중 연접하여 개별 신청한 면적의 합계가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제5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3장-2. 규모 초과 심의

□ **국토교통부 의견**

-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하나의 목적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 개발행위자 및 필지가 다른 경우에는 단일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 【국토교통부 2018. 5. 25.】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둘 이상의 필지에 다수의 개발행위자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에 대하여는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매각을 목적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단일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이며,
- 하나의 개발행위로서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라고 판단 된다면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및 市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道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 단일시설물 설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면 각각의 개발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토지이용 계획의 효율성, 연접개발 여부, 규모 산정의 적법성 등을 재검토한 후, 도시계획 심의 관련 절차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2. 분야 : 개발행위 분야(신청일 : 2020. 3. 20.)

☐ **제목 :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농업용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면 ●●리 산00-00
- 지목/면적 : 임야 / 0,000㎡ 중 0,000㎡
- 지역/지구 : 농림지역
- 용도/구조 : 동·식물관련시설(곤충사육사) / 강파이프조·칼라강판
- 건축면적 : 0,000㎡(0동), 건폐율 00.00%

☐ **신청 사유**

- 농림지역의 임야에서 농업목적의 건축물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도시계획심의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 주요 쟁점
 - (갑설) 농림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이므로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을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또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므로 해당 부지가 임야일지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4조
- 「▲▲ 군계획 조례」 제29조

□ 국토교통부 의견

- 농림지역 안 산림에서 농업용 창고 건축(토지형질변경 포함)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 농업용 창고가 위 법령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르고,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및 제62조 제1항(준공검사)에 따라 「건축법」의 절차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됨.(2013.7.5.)
- 농림지역 임야에 버섯재배사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개발행위 유무와 도시계획심의 해당여부
 - ▶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9.1.29.)
- 농림지역(보전산지)에 농업법인이 누에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되는지 여부
 - ▶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될 것이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건축물의 건축에 적용되는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됨.(2019.4.15.)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농림지역 등인 산림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곤충사육시설이 농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절차를 거쳐 처리하되,

농림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 처리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농림지역인 산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곤충사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3. 분야 : 개발행위 분야(신청일 : 2020. 5. 4.)

□ 제목 : 농업경영체의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절차

□ 사업 개요

- 신청자 : 농업회사법인 ●●●●(유) 대표 ○○○○
- 위치 : ●●면 ●●리 000-0번지(지목 : 전)
- 신청면적 : 00,000㎡ ○ 발전용량 : 000.0kw



□ 신청 사유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는 개발행위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토지 소유권, 사용권 등)만 포함되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전 신청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자의 적격 여부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의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전에 신청인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가 관건인 사항으로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신청 가능하고, 관련 법령 상 신청자의 자격이 따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절차나 행위 등에 대한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군에서 당초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사업계획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수허가자를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체로 변경하여 새로이 신청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기 완료된 행정절차를 승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당초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어 재심의를 필요할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이와는 별개로 태양광발전사업 승계 및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정관, 법인등기)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4. 분야 : 개발행위 분야(신청일 : 2020. 10. 27.)

□ 제목 : 개발행위 위법사항 시정명령 가능 여부

□ 불법행위 개요

- 대상자 : ○○○○○○○(주) ◇◇◇◇
- 위치 : ○○군 ○○면 ○○리 0000번지
- 필지현황 : 0,000㎡(지목 : 전)

구 분	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	0,000㎡ (100%)	0,000.0㎡ (61.27%)	000.0㎡ (5.80%)	000㎡ (32.93%)

○ 행위구분 : 불법 토지형질변경

○ 내용 : 폐지 야적장 사용

- 콘크리트 포장 및 폐지 야적 A=1,334㎡
- 공장부지에 인접한 다수의 필지에 제지 생산에 필요한 폐지를 야적하고 있었고, 2019년 개발제한구역은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 후 원상복구하였으나, 현재 1415번지 일부가 폐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 사유

- 2019년에 위 야적장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 및 시정명령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콘크리트 포장 및 폐지 야적 금지)이 원상복구 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인 ○○면 ○○리 0000번지의 경우 일부 콘크리트 포장 준치 및 폐지 야적 행위가 유지되고 있음

- 이 경우, 상기 토지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33조·제135조

□ 국토교통부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달리 볼 사유가 있는지는 허가권자가 별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낙찰받은 토지의 구조물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려 한다면 허가권자는 필요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의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여부와는 별개로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인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공간계획 :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9개 층에 물건 보관 공간인 다락을 설치할 계획이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 높이는 일정한 평지붕 형태이나 바닥구조체의 높이차가 있고 가중 평균한 높이는 1.5m 이하로 계획되어 있음.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다락”은 건축법 상 정의된 바 없으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수(층고)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서도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각 실에서 “다락”에 해당되는 공간의 바닥구조체 높이가 다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동일한 방에서 층고가 다른 경우로 보고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가중평균한 높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와는 별개로, 건축물 내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다락”에 대해서만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실로 사용한다거나 산정된 층고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6. 분야 : 인허가(건축) 분야(신청일 : 2019. 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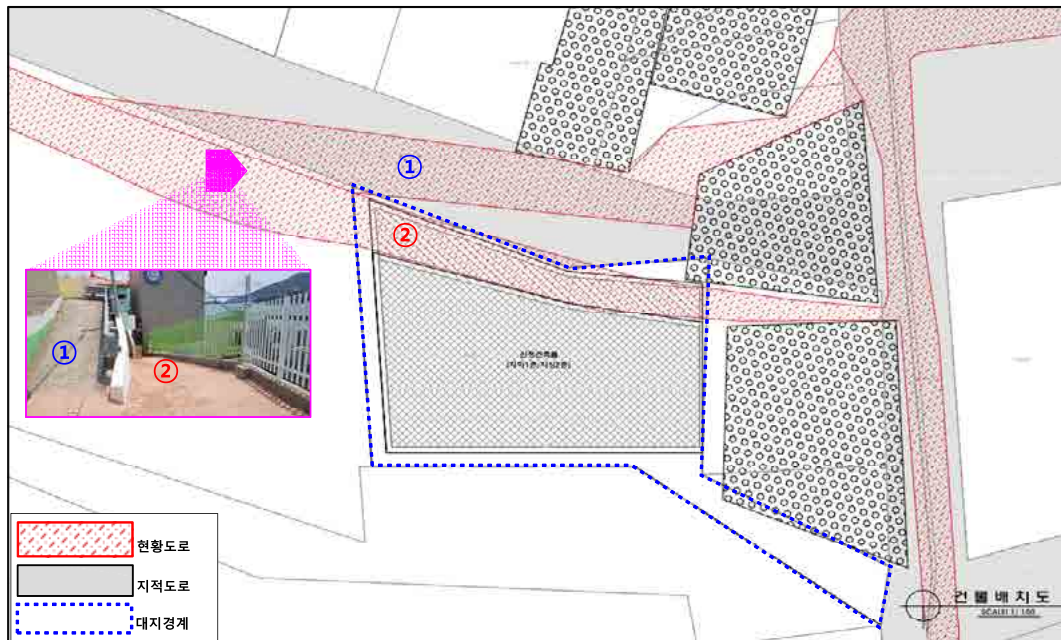
□ 제목 : 건축허가 부지 내 현황도로의 법정도로 인정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건축허가 개요 】

- 위치(지적/지목) : ◆◆시 ■■■동 000 (000㎡ / 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면적(건폐율) : 00.00㎡ (00.00%)
- 건축연면적(용적률) : 000.00㎡ (000.00%) * 층수 : 지하0층, 지상0층
- 용도/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철근콘크리트구조

○ 현황 배치도



□ 신청 사유

- 건축허가 당시에는 설계도면 상에 현황도로(현황 배치도 상 적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착공신고 전 지정된 감리자의 의견을 계기로 신청부지 내에 현황상의 도로가 있음을 인지함.

- 건축허가 신청부지 내에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현황도로(②)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도로가 유일한 통로는 아니며,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지적 상에 위치한 현황도로(①)로도 통행은 가능함.
- 건축허가 신청부지 내의 현황도로(②)를 분할하여 신청 외 면적으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와 해당 도로 부지 내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주요 쟁점(상호 간의 주장)

- (갑설) 「건축법」 제46조에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건축물의 이용 시 보행 및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 확보와 화재·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차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 해당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행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을설) 건축허가 신청부지 내에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통로가 마을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며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지적 상 도로로 통행이 가능함.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나 신청 부지 내의 통행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하지 않아도 됨.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 「민법」 제219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해당 부지 및 주변 도로 등과의 지적경계 불부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현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2개의 도로 중

지적상 해당 대지 내 도로가 현황도로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위한 유일한 도로가 아니고, 건축허가 당시 해당 도로(②)에 대하여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도로를 기준으로 대지면적 제외(건축선 후퇴) 기준 및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 아울러,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와 관련된 건축선 지정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층을 필로티 형태로 개방하여 보행자의 통행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과 차량 통행이 불가한 주변 도로 현황 등 대지 여건을 고려한다면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건축허가 시 도로로 인정된 지적상 도로(①)의 실제 폭이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축물 또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분야 : 인허가(건축) 분야(신청일 : 2020. 2. 25.)

□ 제목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 명 : ◎◎동 대지조성사업
- 사업주체 : (주)㉠㉠㉠㉠㉠
- 위치 : ●●시 ◎◎동 000-0번지 일원(00필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 조성(00가구) / 00,000㎡

□ 신청 사유

-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시 토지사용 권원 확보에 대한 관련 법률 해석의 다양한 견해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토지사용 권원 확보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과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주요 쟁점(상호 간의 주장)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적법 유무
 - (갑설)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대지에 사용권원을 전체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음.
 - (을설) 대지면적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하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 여부
 - (갑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을설)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국가가 지정한 자로 보고,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임.

□ 관련 법규

- 「주택법」 제15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허가권자가 법령 해석의 착오가 있었다라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협의가 진행된 점, 이로 인해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라도, 착공 예정일(기한 명시)까지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처리 시, 이행가능성이 불명확하여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이 무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일부 토지의 소유자 사망 및 일부 상속인의 소재 불분명으로 인하여 사용권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토지를 제외시켜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8. 분야 : 인허가(건축) 분야(신청일 : 2020. 9. 11.)

☐ 제목 :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예외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〇〇〇군 〇〇〇읍 〇〇〇리 000-0
- 면적/지목 : 000㎡ / 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단독주택

☐ 신청 사유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목상 주차장이고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인정한다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건축물의 허가요건 중 대지의 접도 의무를 충족하는지가 관건인 사안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하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도로가 없는 경우라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접도 의무 규정의 취지에 관한 판례 등과 함께 해당 건물이 단독주택이고, 공용주차장 조성 이전부터 존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주차장을 접도 의무가 예외 되는 공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도로로부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해당 대지의 접도 의무 예외 적용 여부는 건축허가권자인 ㉡㉡㉡군에서 상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는 별개로, ㉡㉡㉡군에서 주차장 조례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차장의 명칭·위치·주차대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때 “공지”의 인정 여부를 포함하되,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등이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임.

9. 분야 : 인허가(건축) 분야(신청일 : 2020. 11. 18.)

☐ 제목 : 공사현장 내 임시숙소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시 ◇◇읍 ㉠㉡리 000-0 외 0필지(000-0, 000-0)
- 대지면적 : 0,000㎡
- 건축주 : ●●●●(주)
- 건축면적 : 0,000.00㎡(건폐율 00.00%)
- 구조/지붕 : 경량철골구조 / 판넬
- 용도 : ■■~■■ 간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가설건축물 0동

☐ 신청 사유

- 공사용 임시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 건축물의 구조가 컨테이너 구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허가 해야 되는지 여부
- 가설건축물 적용이 가능할 경우 화재 등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화재 등 안전 조치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시 건축조례」 제2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의5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2·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공사에 필요한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용도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건축법령 상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다른 법령에서 제한 규정이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소방법령 상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소방관서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화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화기 및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및 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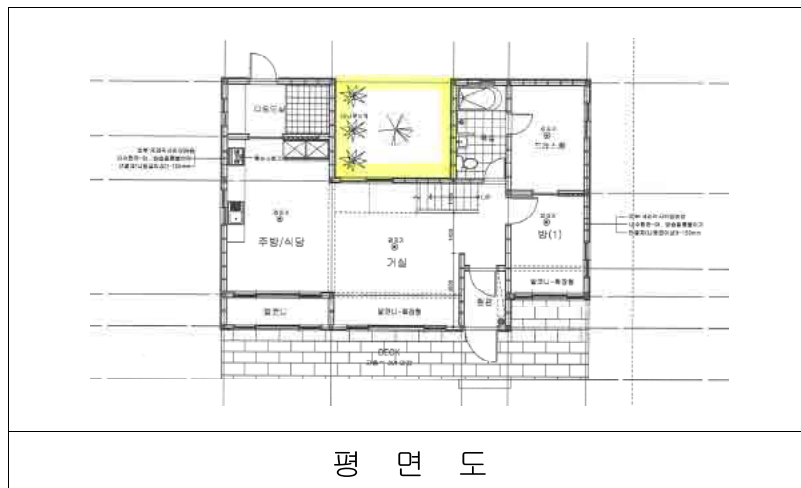
10. 분야 : 인허가 분야(신청일 : 2020. 12. 2.)

□ 제목 : 건축물 외부공간의 바닥면적 산입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군 ●●읍 ●●리 1575
- 대지면적 : 000.0㎡(지목 : 대)
- 용도/구조 : 단독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000.00㎡ / 00.00㎡

[그림] 평면도



□ 신청 사유

- 1층의 내부 거실 공간(거실, 다용도실 욕실 등)을 구성하기 위해 설치된 벽체로 3면이 둘러싸여 있고 2층 바닥면으로 지붕이 덮혀 있는 외부공간을 바닥면적으로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84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제119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벽과 지붕으로 구성된 부분이 건축물의 일부로써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된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고, 건축허가 도면과 같이 해당 공간이 거실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간의 2층 바닥면을 지붕으로 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산입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할 것인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1. 분야 : 인허가(건축) 분야(신청일 : 2021. 5. 31.)

☐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승인 개요**

- 사업자 : ●●●●●(주) (대표 ●●●●)
- 위치 : ●●군 ●●읍 ◆◆리 000-0번지 등 0필지
- 승인일 : 2018. 5. 25.

☐ **신청 사유**

-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후 2년이 넘도록 사업착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부지 일부의 소유권이 경매와 매매로 변경되고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부지 일부도 소유권이 변경됨
- 토지 사용승낙자로부터 본인 토지에 대해 사업 주체가 매입 진행이 중지된 상태로 토지사용 권한이 제한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의 사유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요청 민원 제기
- 사업착수 의무기한(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부지 소유권 변경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 착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용역계약 부동산과 토지소유자간 다툼으로 형사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어 공사 착수 기간을 최대 5년인 2023. 5. 24.까지 연장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주택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그 철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 토지의 소유권 다툼에 따른 형사사건의 결과, 사업 주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 사업자의 예상 손실액,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

12. 분야 : 인허가(건축) 분야(신청일 : 2021. 6. 21.)

☐ 제목 : 사용검사 완료된 대지조성사업 타용도 변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 대지조성사업
- 사업자 : ●●●●●●●●(유)(대표 ●●●)
- 사업위치 : ●●시 ●●면 ●●리 000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00필지 / 00,000.0㎡

☐ 신청 사유

- 「주택법」 제15조 및 제49조에 따라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준공)된 해당 주택 단지 내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토교통부 의견

- 대지조성사업의 목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대지를 당초 승인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함.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주택법」 제15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당초 승인 및 사용검사 받은 대지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받은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임.

13.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19. 2. 26.)

□ 제목 : 마을회관 불법 농지전용 양성화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군 ◎면 ⊕⊕리 000번지
- 용도지역/지목/지적 : 계획관리지역 / 답 / 000m²
- 행위자 : ⊕⊕0구 마을회 대표 ●●●
- 시설현황
 - 용도 : 마을회관
 - 층수 : 0층
 - 면적 : 00.00m²
 - 구조 : 조적조(지붕 : 스라브)

□ 신청 사유

- 농지불법전용 처리지침 규정에 따라 1982년 경에 불법 전용(콘크리트 포장) 하였고, 2003년 마을회관을 준공한 농지에 대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농지법」 제35조·제40조·제42조·제58조
- 「농지업무편람」 참고자료 12.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

□ 판례 (대법원 1993. 2.23. 선고 92누16423 판결)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계고처분 취소
 -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불법 농지전용의 내용이 단순히 농지전용 절차만 결한 경우로 위 불법 전용된 농지가 현행 농지법 및 기타법령의 규정상 농지전용에 적합하며, 허가권자가 농지전용 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14.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19. 6. 4.)

□ 제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출발) ●●읍 ◆◆리 0000-0외 0필지(◎◎◎호텔* 옥상)
(도착) ●●읍 ■■리 0000 지선 공유수면
- 사업자 : (유)■■■■(대표 ●●●)
- 사업규모 : L=0.0km, h=지상 00.0~00.0m, 하강라인 0개
-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통과)면적 : 000m²
 - 대상필지 : ◆◆리 산000-0(임 0,000m²), 0000-0(공원 0,000.0m²)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읍 ◆◆리 000-0일원 00,000m²)

□ 신청 사유

- 공중하강 체험시설(집트랙) 설치사업과 관련, 집트랙 와이어 구간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중구역(H=00~00m, L=00m)을 통과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위반되는지와 설치 가능 여부

< 대립되는 의견 >

- 집트랙 설치사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 여부
 - (갑설) 관련 법령의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치 불가
 - (을설)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 없이 설치 가능

□ 관련 법규

- 「공원녹지법」 제27조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6조·제29조·제30조 별표2·별표3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집트랙 설치사업이 비록 해당 토지에는 정착하지 않고 35~39m의 높이에서 공중공간으로만 통과하게 되어 토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발·도착 시설을 포함한 집트랙 시설 전체를 공작물로 본다면 와이어 일부가 통과하는 구간이 「공원녹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해당되어 행위허가의 대상인 공작물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집트랙 시설에 대한 공작물축조 신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자연환경적 여건 등 해당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허가권자인 ◇◇시에서 협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와는 별개로, 집트랙 와이어가 통과하는 도시공원 등 해당 시유지 구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병행 검토하여야 할 것임.

15.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19. 6. 5.)

☐ 제목 :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입목축적) 적용 관련

☐ 사업 개요

- 위치 : ■■■군 ■■■면 ■■■리 산000외 0필지
- 면적 : 00,000㎡(지목: 임야)
- 지역·지구 : 보전산지(임업용)·준보전산지
- 산지전용허가면적 : 00,000㎡
- 전용목적 : 초지 조성

☐ 신청 사유

- 신청인이 제출한 산림조사서 상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150% 미만이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산림조사서 상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150%를 초과 할 경우, 어떤 산림조사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되는지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산림조사서 결과를 우선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8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0조 별표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해당 지역 내 산지의 적절한 이용이나 보전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군에서 각각 시행한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 조사결과가 서로

달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동일 부지 내 산지전용을 위해 해당 민원인과 재협의 시, 입목 축적은 표준지조사 방식보다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측정·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는 별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Ⅲ-Ⅲ-2에서 지역 여건 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또는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19. 8. 13.)

□ 제목 :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및 사무위임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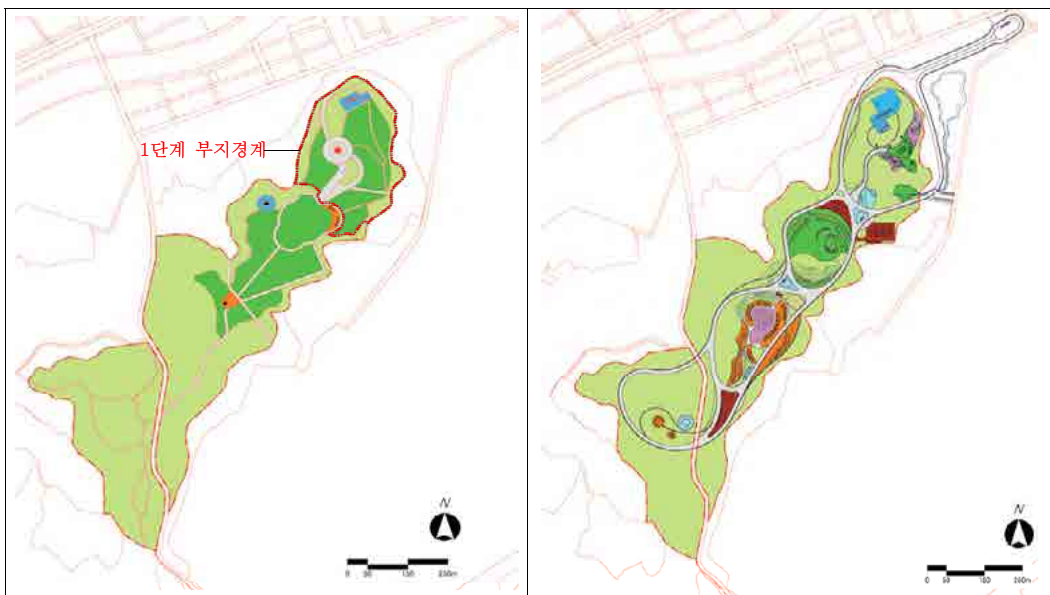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공원명 : ●●공원(●●공원)
- 시설종류 : 근린공원
- 위치 : ●●군 ●●읍 ◆◆리 000 일원
- 면적 : 000,000㎡
- 최초결정일 : 0000. 0. 00.

□ 신청 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일몰제로 실효(0000. 0.) 되기 전에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면적이 000,000㎡으로 변경은 없으나 [그림] 및 [표]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발생함.

[그림] ●●공원 토지이용계획도



- 당 초 -

- 변 경 -

[표] ●●공원 토지이용계획 증감표

시 설 명		부지면적(㎡)		
		당 초	변 경	변경면적
합 계		314,450.0	314,450.0	
1단계 (시설 면적)	소 계	110,193.5	99,222.0	
	도로 및 광장	26,516.0	40,568.0	22,986
	조경시설	72,955.5	21,293.0	△51,662.5
	교양시설	8,450.0	4,611.0	△3,839
	휴양시설	2,272.0	11,643.0	12,033
	유흥시설	-	6,592.0	6,592
	편익시설	-	8,487.0	8,487
	운동시설	-	1,124.0	1,124
	관리시설	-	4,904.0	4,904
녹 지		204,256.5	215,228.0	10,971.5

※ 변경 면적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증가, 감소, 위치변경 등)이 일어나는 면적의 합으로 산정

- 위와 같이 변경 사항 발생 시 군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4 권한 위임사항의 변경결정 수임기관(군수)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4

□ 국토교통부 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인가(변경)의 동시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음.(2010. 2. 11.)

-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음.(2008. 6. 10.)
-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중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서 공원시설 부지면적이라 함은 공원시설 전체면적을 의미함.(2008. 3. 27.)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의 범주로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도시계획시설(공원) 입안과 동시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2007. 5. 25.)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해당 공원이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시설로서 동일한 부지 내 면적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해당 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일몰제 실효 전에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조례」에 따라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7.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21. 9. 14.)

□ 제목 : ■■ ■■■■■ 개발구역 내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 ○○○○○ ■■■■(△△△△) 개발계획 골프장 #0
- 사업내용
 - 시행자 : ○○○○○○(주)
 - 규모 : 00홀(000,000㎡)
 - 승인일 : 2015. 4. 21.
 - 사업기간 : 2015. 4. 21.~2021. 4. 20.
- 추진경위
 - 0000년 0월 : 골프코스 #0 사업계획 승인(■■■군)
 - 0000년 0월 : 골프코스 #0 실시계획 승인(■■■군)
 - 0000년 0월 : 골프장 부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으로 소유권 취득
 - 0000년 0월 : 골프장업 개발 전담 법인 ○○○○○(주) 설립
 - 0000년 0월 : 골프코스 토공사 착공

□ 신청 사유

- ○○○○○○(주)는 2015. 4. 2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군 ■■■면 ■■■리 일원에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음.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 체육시설업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년 이내에 시설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나, 현재 공정상 사업기간 내 준공은 불가한 상황으로 같은 법 제31조 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됨.
- 사업을 취소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 개발사업 전체 공정의 중단과 공공의 이익보다 제3자의 손해가 막대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상기 상황들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제31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시설 설치기간 내 체육시설(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였고, 시설 설치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 설치기간이 경과한 사유와 구체적 경위, 사업의 진행 정도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 사업자의 예상 손실액,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군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사실상 시설 설치기간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함.
 -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취소 유예 기간을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8.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19. 9. 27.)

☐ 제목 : 토석채취 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구 분	기 존 허 가	(금회) 허 가 신 청
위 치	●●면 ●●리 산000 외 0필지	●●면 ●●리 산000, 산000-0, 산000-0, 산000
수허가자 (신청인)	■■■■(주) ■■■	○○○○○○(주) 대표 ◆◆◆
신청면적	00,000㎡	00,000㎡ (토석채취 00,000㎡, 완충구역 00,000㎡)
신 청 량	000,000㎥	000,000㎥
사업기간	0000. 0. 0. ~0000. 0. 00.	허가일로부터 10년

☐ 신청 사유

-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연접”의 의미와 일반국도 1천미터 이내의 지역 내에서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와 연접하여 신청 시 신규사업자는 토석채취 행위제한 구역의 규제를 받지 않고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2조의4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하여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수허가자가 연접하여 토석 채취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석 채취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그 밖에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완충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연접된 채석장의 주변이 평탄지로서 토석 채취 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 우려가 없다면 연접구간에 대한 완충구역은 필요가 없을 것이나, 주변에 산림이 있고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일 경우에는 붕괴 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군에서 판단하시기 바람.
- 다만, 기존의 완충구역에 대한 토석채취 및 경계설정 문제는 사업권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8 제3호에서 규정한 토석 채취 허가기준인 허가면적에 대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완충구역 제외)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할 것임.

19.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19. 10. 16.)

☐ 제목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구 분	(당초) 실시계획 인가고시	(금회) 실시계획인가 신청
사 업 명	▲▲ □□ C.C 조성사업 (00홀)	좌동
위 치	▲▲군 □□면 ○○리 산000번지 일원	좌동
면 적	0,000,000㎡	좌동
사업기간	0000. 00. 0. ~ 0000. 0. 00.	실시계획인가일 ~ 인가일로부터 00개월
시 행 자	■□■(주) ○○○○	좌동

☐ 신청 사유

- 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2019. 6. 30.로 만료된 경우,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제13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 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 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음.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국토계획법」 제91조 제1항 제15의2호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후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변경인가·고시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에 따른 효력이 있다는 법제처 회신내용은 실무상 다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신규 실시계획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신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대신하는 효력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 별개로 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 실시계획에 대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야 할 것임.

20.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21. 3. 31.)

□ 제목 :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시 ●●동 0000-00(경관녹지)
- 면적 : 000.0m²
- 지목 : 도로
- 이용현황 :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 도시계획 시설 : 경관녹지(2017. 7. 21. 지정)
- 토지계획 이용현황



□ 신청 사유

- 2017. 7. 21. ◇◇시 ●●동 일원을 경관녹지로 지정하였고, 녹지와 땀지를 연결하고 있는 ●●동 0000-00번지 도로를 건축물 진입 도로로 활용 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 「건축법」 제44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건의 녹지는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녹지안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것도 아님.
- 따라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이용 중이고 포장이 완료된 도로를 건축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1.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21. 4. 12.)

☐ **제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 고시 해지 절차 없이 인허가 가능 여부**

☐ **신청 개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청 사유**

-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에서는 제한 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지형도면 고시가 미해지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8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조례의 개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지형도면 고시가 해지되지 않은 사유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등 토지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2.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21. 4. 22.)

□ 제목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지 신규 허가 방법

□ 사업 개요

- 위치 : ■■■군 ■■■면 ■■■리 000-0번지
- 면적 : 0,000.0m²
- 허가목적 : ⊕⊕⊕ 양식장
- 허가기간
 - 당초 : 2011. 3. 22.~2016. 2. 28.(5년)
 - 연장 : 2011. 3. 22.~2021. 2. 28.(10년-연장 5년)

□ 신청 사유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로 해당 농지를 ⊕⊕⊕ 양식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함.
- 피허가자가 계속하여 해당 부지를 ⊕⊕⊕ 양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신규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군에서는 해당 농지가 집단화 조성되어 있고,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임.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계속하여 우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추가연장은 불가능 하나, 농지로 원상복구 후 신규 허가 신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 관련 법규

- 「농지법」 제34조·제36조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함.
- 다만, 그 즉시 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도한 복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지전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해당 용도지역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등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는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농지법」의 규정과 ■■■군의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함이 타당할 것임.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 따르면 이 건의 해당 시설이 신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원상복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는 ■■■군 재량사항이므로, ■■■군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상복구 또는 신규 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23. 분야 : 인허가(기타) 분야(신청일 : 2021. 6. 28.)

□ 제목 : 일반산업단지 분양권 전매 및 대물변제 용지 처분 가능 여부

□ 산업단지 현황

- 소재지 : ■■■군 ■■■면 ■■■리, ■■■면 ■■■리 일원
- 시행자 : ■■■군, ⊕⊕⊕⊕⊕⊕⊕⊕(주)
- 면적 : 000,000㎡(분양대상 면적 000,000㎡)
- 분양률 : 90%(가동률 : 47%)

□ 신청 사유

- 산업단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분양대금 잔금 납부가 어려워 입주계약 해지를 희망하나 해지 위약금(10%)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지에 신규 기업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입주를 희망 하고 있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산업단지 용지를 소유한 업체가 처분 신청을 할 경우 관리기관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2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5. 3. 17. 발간한 산업집적법 유권해석 책자에도 산업용지에 대한 잔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처분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분양대금 잔금 납부 이전이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신규투자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제한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대물변제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업체라면, 「산업집적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지 처분 주체인 입주기업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계약에 참여하였고, 계약 조건에 부지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등의 제한을 하지 않은 이상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 계약 해지 및 처분(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4. 분야 : 일반행정 분야(신청일 : 2020. 8. 26.)

☐ **제목 :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업체명(대표자) : ●●●●(◆◆◆)
- 허가번호 : ◎◎ 제0000-00호(0000. 0. 00.)
- 종류/규모 : 육상수조식(㉠㉠) / 000.00㎡(수조 000.00㎡)
- 허가기간 : 0000. 0. 00.~0000. 0. 00.
- 소재지 : ◎◎시 ■■■면 ■■■로 000-00
- 내용 : 무허가기간 생산된 ㉠㉠종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요청

☐ **신청 사유**

- ●●●●의 허가 없는 기간 동안 생산한 ㉠㉠종자에 대한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종자생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적정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제10조 내지 제16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당초 종자생산확인 신청 시 기존의 수산종자산업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자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종자생산업체로서 매년 종자생산이 확인된 업체였으며, 또한 수허가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허가신청 반려 처분이 취소되어 수산종자산업이 허가된 점을 고려한다면, 취소된 해당 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수산종자생산업체로써 종자생산 확인 신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확인서 발급 시 종자수량(추정)에 대해서는 0000. 0월 실시한 1차 ㉠㉠종자 자가생산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수허가자의 생산량 (약 0,000천미) 기준으로 최종 현장 확인을 거쳐 결정하되, 업체별 평균 생산량·폐사율 등을 고려하여 수허가자가 방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량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5. 분야 : 일반행정 분야(신청일 : 2020. 11. 3.)

□ 제목 : 침수피해 복구에 자활기금 활용 가능 여부

□ 침수피해 개요

- 피해내용 : ●●●●●●센터 사무실 및 3개 ●●사업장 침수
- 피해금액 : 000백만원(●●센터 00백만원, ●●사업단 000백만원)
- 시설별 현황

시설명 (소재지)	피해상황	피해금액 (백만원)
①①자활센터 (●●읍 ●●로 000)	건물 침수 - PC, 책상·의자, 수납장 등	00
②②②사업단 (●●읍 ●●리 00-0)	농경지 침수 - 하우스 3동, 컨테이너 2동, 저온저장고 1동 - 비트 생산품, 포장용기 등	00
④④④④④사업단 (●●읍 ●●리 00-0)	농경지 침수 - 컨테이너 1동, 생산품 박스 등	00
④④사업단 (●●읍 ●●0길00-00)	건물 침수 - 집기류, 생산품, 포장용기 등	00

【 기금 현황(0000년 기준) 】

- 운용수입금 : 000백만원
- 사업비 : 예산 000백만원, 집행액 000백만원, 잔액 00백만원

□ 신청 사유

- ●●지역의 홍수로 인하여 건물이 침수되어 사무실 및 교육장 집기 등이 피해가 있어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군, ■■■■■■■■ 등)에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없는 상황임
- ●●군에서는 건물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상반기 안에 시설을 재운영할 계획이지만, 사무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무실 정상 운영 및 자활참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복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주요 쟁점

- (갑설) ○○기금의 성격이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홍수 피해로 인하여 ○○센터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참가자들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금의 지원의 성격과 일치함
- (을설) 홍수피해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정부 및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며, 센터의 집기 등 기능보강 성격은 기금사업 용도와 부합하지 않음

□ 관련 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 제26조의4 · 제26조의5
-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전남복지재단 기금관리규정」 제4조 내지 제10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써 기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센터 등 피해복구사업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인 사항임.
- ●●재단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사업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복구지원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금의 운용수입금 및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검토하되, 이를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시켜 이사회에 승인을 얻고, 해당 기관 · 단체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와는 별개로, 피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군이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6. 분야 : 일반행정 분야(신청일 : 2020. 11. 23.)

□ 제목 : 처분제한 산업용지 처분 시 양도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 처분신청 개요

- 처분대상 : 산업시설용지 및 공장(일반창고업)
 - 용지 : ●●시 ◆◆동 0000-0(공장용지, 0,000.0㎡)
 - 건축물 : 창고시설 0동, 0,000.0㎡
- 취득가격 : 000,000,000원
- 신청자 : ■■■■
- 처분사유 : 기존 소유 공장의 확장으로 자금 여력이 없어 처분

□ 신청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처분 신청된 건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항 제3호의 미분양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신청인은 창고업 개시 후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공사대금 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분대상 창고를 건축한 건설업체에 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양도하고자 건설업체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함.

□ 관련 법규

- 「산업집적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 관리기관에서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때 따로 공고를 통해야 하는지, 대상업체가 있으면 바로 양도가 되는지 여부
 - ▶ 관리기관은 영 제4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사유로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처분신청 대상 산업용지의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해당 물건을 처분함에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인 사항으로써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관리기관이 매도가격 등을 공고하는 등 입주희망자 모집 절차를 거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 물건이 입주허용업종인 일반창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고 건축물이 포함된 점과 업종배치계획 상 동일업종의 산업용지가 분양 완료된 점을 고려 한다면 매도공고를 통해 입주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는 별개로, 양도 가격의 적정성과 함께 입지보조금 등 분양 당시 지원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후속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27. 분야 : 일반행정 분야(신청일 : 2021. 4. 13.)

☐ **제목 :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인 면허취소 처분 유예 가능 여부**

☐ **신청 사유**

- 2021. 7.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2021. 8. 26. 상속인(자녀)이 면허 상속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 9. 1. 신고 수리함.
- 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90일 이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2021년 교통안전교육 예약이 마감되어 교육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교육 이수 가능한 시기까지 면허취소 처분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운수법」 제15조·제85조
-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제27조의2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인 면허취소 처분 유예 가능 여부 :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법」 제19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운송사업자는 9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속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은 2021. 12. 31.까지 예약이 마감되어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2021. 11. 30.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 해야 됨.
 - 상속인의 ‘사업 면허취소’ 사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이나, 교육 미이수의 원인이 상속인의 태만이나 해태로 인한 것이 아닌 교육 예약 조기 마감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만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상속인이 면허 기준 미충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한 시기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8. 분야 : 일반행정 분야(신청일 : 2021. 6. 1.)

☐ 제목 : 농어촌도로 점유취득 가능 여부

☐ 농어촌도로 현황

소재지 (△△읍 ◆◆리)	지목	면적(㎡)	토지 소유권	
			소유자	특이사항
0필지		0,000	◇◇◇(주)	2020. 1. 20. 신규 취득
산000-0	임야	000	상동	상동
산000-0	임야	00	“	“
산000-00	임야	000	“	“
00-0	임야	000	“	“

☐ 신청 사유

- △△군이 상기 토지를 농어촌도로 000호선으로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없었고, 당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주)가 2020. 1. 20.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농어촌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
- △△군이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000호선에 대해 「민법」 제197조 제1항 및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민법」 제197조·제245조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 점유취득시효권 소유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군이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군 소유로 인식하는 것)로 점유사용 한 것의 인정은 기부채납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등 △△군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소유권 취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군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민법」 제248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점유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29. 분야 : 일반행정 분야(신청일 : 2021. 8. 18.)

□ 제목 : ●●●● 사업구역 내 집단 무연분묘 산골(散骨) 처리 가능 여부

□ 신청 사유

- ●●●●●(●●●●●) 개발사업 시행 중(0000년 0월 공정률 28%)

사업 기간	면적	사업비	계획 인구	시행자
2010년~2025년	0,000만㎡	0조0천억원	00,000명	○○○○○○○○○○○○○○(주)

- 사업구역에 포함된 무연분묘 0,000기 산골(散骨)처리 검토 중
 - 1980년 초 농업진흥공사에서 △△면 ▲▲지구 농지확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리 등 10개 리의 무연분묘 0,000기를 개장하여 ◇◇리로 이장·집단 안치
 - 당시 무연분묘 개장 관련 서류 부존재 : 보존기한(10년) 경과(도·군·공사)
- 개장허가·개장신고 등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화장 후 10년간 봉안하지 않고 무연분묘 산골(散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4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집단 무연분묘 0,000기 산골 처리 가능 여부 : 가능
 -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된 △△면 ▲▲지구 농지확대개발사업의 환지 토지원부(1981년)에 집단 매장지 지번 및 지목 포함
 - 40년 전 당시 법령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해 개장 허가를 받아 무연분묘를 집단 개장(묘지석 확인)
 - 2021. 8. 6. 보건복지부도 개장 허가를 받고 이장된 무연분묘는 개장신고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함.

30. 분야 : 일반행정(보조금) 분야(신청일 : 2019. 9. 27.)

□ 제목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계약방법

□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산림소득 공모사업)
- 사업기간 : 3년(2019년~2021년)
- 사업비 : 0.0억원(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0%)
 - 연차별 사업비 각 1.2억원
- 사업내용 : 숲 가꾸기 및 기반조성(건축 공사 등)
 - 1년차) 설계용역 및 기반조성(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2년차) 식재 및 시비, 종묘(황칠나무) 구입
 - 3년차) 토목 및 건축(관리사, 건조시설 등) 설계·공사

□ 신청 사유

-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총 3년간, 0.0억원(연차별 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각 연차별로 작업로 개설, 식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사업의 내용이 상이함.
-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공사 및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을 3년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별 사업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5. 민간자본이전(402목)
-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시행지침」 3. 사업관련 계약

□ 산림청 의견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각 회계연도별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단,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총 사업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 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목적 달성 여부는 전체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이 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총 3년간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총괄적으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보조금은 연차별로 교부결정·정산되는 사업이므로 각 회계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계약체결 등)하면 됨.
- 단,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규정(「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있고, 해당 사업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하인 사업이므로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계약절차 및 방법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면 됨.

31. 분야 : 일반행정(보조금) 분야(신청일 : 2020. 8. 20.)

□ 제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대상사업장 : (주)●●(대표자 ▲▲▲)
- 공사실행업체 : (주)●●● 대표이사 ●●●(●●●●●●●●●●)
- 신청시설 : ●●●●●● 00m³/분
- 보조금 지원액 : 00,000천원

□ 신청 사유

- 보조금 사업계획과 다르게 방지시설이 바뀌어 시공된 사항이
보조사업 변경대상이 되는지와 당초 사업 승인과 다르게 시공
되었으므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
- 시설 변경사항
 - (당초) ●●●●●● 50m³/분(연마0공정)
 - (변경) ●●●●●● 50m³/분(연마0공정)
 - (사유) 사업신청 당시 (주)●●에서 신청한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
시설(연마시설)의 용량 표기를 (주)●●●에서 착오 기재
(0.0HP→0HP)하여 제출

□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7조·제19조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5항 내지 제7항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방지사설 설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보조금 지급 전 당초 제시한 대기오염방지사설 설치 계획서대로 설치되었는지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설치계획서에 명시된 방지사설과 다른 생산공정의 방지사설을 설치되었더라도 ●●시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에서 현장 확인 및 위치 변경된 방지사설의 기술사양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방지사설 설치 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당초의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된다면 보조금 청구서류와 변경된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변경된 사업을 기준으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 집행 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는 별개로, 향후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에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유해물질 배출농도 등 항목별 우선순위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32. 분야 : 일반행정(보조금) 분야(신청일 : 2020. 8. 28.)

☐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취소 수수료 지원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 선진지견학
- 보조사업자 : (사)●●●●●●●● 전라남도연합회(회장 : ◆◆◆)
- 사업비 : 00백만원(도비 00, 자부담 0) * 민간경상보조(307-02)
- 취소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상향
(주의→ 경계, 1. 27.)되어 추가 확산 방지

☐ **신청 사유**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해외연수를 위해 항공권을 발권한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에서 ‘경계’ 로 격상되었고, 전라남도는 해외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외연수 취소를 권고하여 해외연수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따른 항공권 예약 취소 수수료 0,000천원이 발생함.
- 해외 연수를 취소한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항공권 예약 취소 수수료를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정산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II-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4-가-4)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코로나19”로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처리 시, 항공권 사전예약 후 취소 수수료는 보조 비율대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동사업이 불가피하게 중지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를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출장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33. 분야 : 일반행정(보조금) 분야(신청일 : 2020. 10. 21.)

□ 제목 :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위치 : □□읍 ■■로 000 일원 빈집·빈점포
- 사업대상 : □□군 청년 및 거주·창업·활동 희망 청년
- 사업비 : 000백만원(도비 000, 군비 000)
- 사업내용
 - (H/W) □□읍 일대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청년 주택·점포 조성
 - (S/W)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청년 □□살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기관 : □□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추진 거버넌스 : □□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청년문화분과위원회

□ 신청 사유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인 청년창업자가 직접공사 추진 또는 원하는 업체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여부
- 예비창업자 직접 수행에 있어 창조적인 리모델링 사업 결과물과 그에 따른 군의 사업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계약 방식에 벗어나 예비창업자가 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공하고, 추후 재료비·인건비 등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6항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내지 제20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V-③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13-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0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보조사업 추진 및 계약상대자 선정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이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점포를 조성함으로써 청년 주거 안정 및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특성상 기존 빈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때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인 아이템과 활동력을 적용한 독창적인 자립시설 조성과 함께 영업장 내 집기·비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공사와 물품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구분된 공사와 물품이 각각 추정금액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인 견적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이와는 별개로,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계약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에서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34. 분야 : 일반행정(보조금) 분야(신청일 : 2020. 11. 6.)

☐ **제목 : 보조사업 잔여 공사비 사용 관련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 리모델링사업
- 위치 : ●●읍 ●●리 000-0
- 보조사업자 : 대한민국 ●●●●●● ●●군지회
- 사업비 : 000백만원(전액군비) (민간자본사업보조)
- 공사기간 : 0000. 0. 00.~00. 00.
- 사업내용 : ●●●●●●건물 외벽·화장실개보수·창문교체·옥상방수·
누수방지·소방·전기공사 등

☐ **신청 사유**

- 보조사업자의 리모델링 사업기간 동안 ◆◆회관(군소유) 내
임시 사무실을 사용 중, 0000. 0. 0.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무용
집기·비품(책상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함.
- ●●●●●●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0,000천원)으로 당장
시급한 집기·비품류 등의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비 집행 현황 : 000,000천원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4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내지 제19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V-③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13-1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보조사업자가 그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임.
- ●●●●●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집기·비품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보조사업자가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이와는 별개로, 보조사업 추진 및 계약상대자 선정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35.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4. 3.)

□ 제목 :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시설 현황

- 위치 : ■■■읍 ●●로 3-1 (◆◆리 284)
- 대지면적/건축연면적 : 0,000㎡ / 0,000㎡ (지하 0층, 지상 0층)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 의료시설
- 사업비 : 00억원(국 00, 도 0, 군 00)

○ 운영 위·수탁 현황

- 수탁업체(대표) : 의료법인 ●●●●●●(●●●●)
- 계약기간/방법 : 0000. 0. 00. ~ 0000. 0. 00.(00년간) / 수의계약
- 대상/진료과목 :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 /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한방과
- 근무인력 : 00명 (의사 0, 간호사 00, 기타 00)
- 병상수 : 000병상 / 000명 입원 중(2018년 12월 현재)

○ 기부채납(2회) 현황

- 기부채납자 : 의료법인 ●●●●●●
- 대상 : ① 신축 부지 0,000㎡(0000년), 0000년 공시지가 000,000원/㎡
② 증축 부지 0,000㎡(0000년), 0000년 공시지가 00,000원/㎡

□ 신청 사유

- 「치매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통한 수탁자 선정은 특혜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법령상 기존 수탁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업체명/민원접수일 : ●●●●●● / 0000. 0. 00.

□ 관련 법규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제7조의4 · 제7조의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5
- 「**■**■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 제22조의3
- 「**■**■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제12조

□ 보건복지부 의견

-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 관련, 「치매관리법」의 규정이 「공유재산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 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운영 위탁 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운영평가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며, 이는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공유재산법」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치매관리법」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계약 건에 대하여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기부채납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기존 수탁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임.

36.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8. 13.)

□ 제목 : ●● ○○○● ●●●● 조성사업 경관조명 설치공사
위탁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 ○○○● ●●●● 조성사업 경관조명 설치공사
- 위치 : ●● 공유수면 인접 해안도로 0.0km 일원
- 사업내용 : ○○대교, ◇◇IC접속교, ○○○대교 접속교, ●●
대교,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
- 사업비 : 0,000백만원(지방비 100%)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

□ 신청 사유

-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 설계검토, 조명자재의 품질, 시공관리 및 지원, 자재 검수 등 사무 전반을 「지방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7절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계약사무의 위탁이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개별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 이 건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경우는 설계검토, 사업자선정(입찰 공고), 계약체결지원, 제품검증, 시공관리 및 지원, 하자검사 지원 등의 계약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의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무만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임.
- 한편, 계약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①공기업과 준정부기관, ②지방공사와 지방공단, ③공익목적 비영리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④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만이 해당 됨.
- 그리고 계약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계약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7.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9. 6.)

☐ **제목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공구 분할발주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0000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위치 : ●●군 00개 읍·면
- 사업내용 : 저소득층 000세대 등 철거 및 LED전등 설치
- 사업기간 : 0000. 00. ~ 0000. 0.(착수일로부터 000일)
- 사업비 : 000백만원(국비 00%, 군비 00%)

☐ **신청 사유**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군 내 00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대상지역 중 육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 0개소, 해상교통 접근 가능지역이 0개소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성격이 단순하고 접근이 용이한 읍·면을 각 공구로 분할하여 시공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군민들에게 빠른 시기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면별로 공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방계약법령」에서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에 대해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기 또는 공사량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

- 이 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00개 읍·면 000세대를 대상으로 LED전등을 교체해주는 단순 전기공사로 0000년에 국비 보조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군의 지리적 특성 상 육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지역 00개소 중 0개소뿐이며, 그 외 0개소는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예산 소요내역 검토 결과 통합발주 경우와 3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할 경우에도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으로써 낙찰하한율이 87.745%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예산의 손실이 없고, ●●군 내 전기공사업체가 00개소 등록되어 있어 경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함.
- 따라서, 사업 대상지역의 거리적 제한 및 사업계획 내 공사 완료 여부, 예산손실, 계약의 공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할 시공의 효율성이 인정됨에 따라 각 공구별로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군에서는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시기 바람.

38.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10. 15.)

☐ **제목 : ○○사랑상품권카드 업무대행 협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발행주체 : ○○시
- 업무대행기관 : ○○○○○은행
- 예산액 : 0억원(국비 0, 특별교부세 0, 도비 0, 시비 0)
- 예산과목 : 201-01
- 예산용도 : 할인비용, 홍보비용, 발행 및 제작 수수료 등

☐ **신청 사유**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사랑상품권 운영 업무대행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인 비용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판매 대행점에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상 선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사전에 「시 조례」 개정 및 업무대행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시 조례」 및 업무대행협약에 따라 ●●사랑상품권 카드 할인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여부 및 금액을 필요시마다 정산하도록 하여 할인비용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손실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와는 별개로, 「시 조례」에 따른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판매대행점에 지급하는 부담경비를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금(307-05)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39.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11. 13.)

☐ 제목 : 상수도관 이설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 위치 : ●●군 ●●면 ●●리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개월
- 사업내용 : 상수도관 D=00mm, L=0.00km
- 사업비 : 000백만원(지방비 100%)
- 발주기관 : ●●군

<●●~●●간 도로건설공사>

- 위치 : ●●군 ●●면 ●●리 일원
- 사업기간 : 0000. 0. 00.~0000. 0. 00.(0년)
- 사업량 : L=0.00km, B=00.0m (▲▲교 L=000m, B=00.0m, still box교)
- 사업비 : 00,000백만원(국비 100%)
- 발주기관 : ■■■■■■■■■■청

☐ 신청 사유

-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 도로 건설공사(연도교 건설)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로 ⊕⊕길 철거 예정으로 기존 상수도관이 ⊕⊕길에 매설되어 있어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불가피함.
- 교량 설치 완료 후 상수도관 매달기 시공 시 예산의 추가소요 및 도로 건설공사와 상수도관 분리발주 시 시공사 상이로 작업 혼란 및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 곤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을 검토하되, 특정한 위치·구조·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임.
- 이 건 상수도관 이설공사의 경우는 연도교 건설공사에 따라 공사 준공 후 기존 ㉠㉠길이 철거될 예정이고, ㉠㉠길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상수도관 이설이 꼭 필요한 상황임.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므로 입찰하여야 하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신설 연도교 노상 다짐공정과 상수도관 부설 구간이 중복되어 도로 건설공사 준공 후 상수도관 이설 공사를 실시할 경우 기존에 타설 했던 콘크리트를 파쇄 후 상수도관 부설하는 중복공정이 발생하는 점, 일부구간 포장에 대한 하자발생 시 책임 구분 곤란, 공사기간 연장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의계약 대상 공사 평가표에 따라 적정 점수 이상인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40.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11. 21.)

☐ 제목 : 토목공사에 수목 식재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강 강변도로 개설공사(2단계) 1공구〉

- 사업명 : ●●● ○○○○ 개설공사(2단계) 1공구
- 위치 : ●●군 ○○면 ●●리~●●읍 ○●리
- 사업량 : L=0.00km, B=0.0m~00.0m, 교량 2개소 000m
- 사업비 : 000억원
- 사업기간 : 0000. 0월 ~ 0000. 0월

〈수목식재 공사〉

- 위치 : ◆◆강 강변도로 L=0.00km(성토 범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사업량 : ㉢㉢나무 000주, ●●나무 000주
- 사업비 : 0억원

☐ 신청 사유

- ◆◆강 강변도로 개설공사(2단계) 1공구 추진 중 ●●군(□□ □□과)로부터 ◆◆강 강변도로 특색에 맞는 경관조성 및 지역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가로수 식재 건의가 있었음.
- 공사 구간이 연약지반으로 흙 쌓기 하중에 의한 침하 및 지지력 부족에 따라 지반파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고, 조정 식재공사는 토목공사 마감 공정과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조정공사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여도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7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고, 당초 설계에 수목식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 이 건 수목 식재공사의 경우는 〇〇군에서 ◇◇강 강변 경관 조성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전라남도에 수목식재를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 공사구간이 연약지반으로 침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고, 수목 식재구간이 토목공사 구간과 시기적·공간적으로 중복되고,
-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 토목공사 마무리 공정(측구, 성토사면 다짐 등)과 수목식재 작업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시공되어야 함에 따라 별도 발주 시 2개의 업체가 각각 시공할 경우 공사구간의 중복 및 단일 진입도로로 작업상 혼잡 등으로 시공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점,
- 입찰에 따른 낙찰률 적용 등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소요액과 당초 강변도로 개설공사 계약상대자가 수목식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공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임.

41.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11. 25.)

☐ 제목 :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 ▲▲▲ 조성사업 건축공사
 - 위치 : ●●군 ○○면 ●●리 00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기념관 증축, 부대시설 공사 등
 - 사업기간 : 0000. 00. 00.~0000. 00. 00.
 - 사업비 : 0,000백만원(도급 0,000, 관급 0,000)
 - 1차) 0,000백만원(도급 0,000, 관급자재 000)
 - 2차) 0,000백만원(도급 0,000, 관급자재 000)
 - 3차) 0,000백만원(도급 0,000, 관급자재 000)
- ※ 1차분 준공, 2차분 계약 체결 후 업체 부도로 공사계약 해지(0000. 0. 00.)

☐ 신청 사유

-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차수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발주로 계약할 경우 단가 상승 등으로 5억원 이상 공사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7조·제28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이 건 건축공사의 경우 0000. 00. 00. 계약을 체결(총괄 계약금액 00억원)하여 추진하던 중 당초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타절액 00억원)함.
-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잔여 물량(00억원)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규모 사업이므로 특혜시비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입찰의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품질의 확보, 예산 절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군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추진하고 업체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분할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잔여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시기를 나누어 분할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에 분할 수의계약을 검토·추진할 수 있을 것임.

42.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19. 12. 9.)

□ 제목 :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과업변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조형물 설치용역 개요

<▲▲군 ■■■ 천년 상징조형물 설치용역>

- 사업기간 : 0000. 0. 00.~0000. 0. 00.(계약일 : 0000. 0. 0.)
- 위치 : ▲▲읍 ●●리(●●삼거리 인근)
- 사업비 : 000백만원(군비 100%)
- 사업내용 : 상징조형물 설치 1식(B=00m, H=0m)
- 계약상대자 : (주)■■■(■■ 소재 업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형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0000년 0월부터 용역 일시정지 중

◆ 선형개선 관련 용역 및 공사 개요

<0000년 구국도 00호선 선형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0000. 0. 0.~0. 00.(계약일 : 0000. 0. 0.)
- 사업비 : 0.0백만원(군비 100%)
- 계약상대자 : □□□□□□□(주)
- 준공일자 : 0000. 0. 00.

<0000년 구국도 00호선 선형개선공사>

- 사업기간 : 0000. 0. 0.~0000. 0. 0.(계약일 : 0000. 0. 0.)
- 사업비 : 000백만원(군비 100%)
- 계약상대자 : ●●●●(주)

※ 계약상대자의 공사추진 불가능에 따라 0000년 00월 선형개선공사 계약 해지

□ 신청 사유

- ▲▲군 ■■■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 용역 계약체결 이후 조형물 설치장소의 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위해 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상징조형물 설치 용역은 2018년부터 일시정지 중임.

- 선형개선공사 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조형물 설치용역 일시정지 기간 및 사업 기간의 장기화가 예상 되어 조형물 설치용역 업체와 협의를 통해 디자인 및 위치 등 과업을 변경하여 조형물 설치용역을 추진해도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
-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이란 계약의 목적 상 필요하여 당초 용역내용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공정계획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이 용역의 목적은 ▲▲읍 주 진입로에 ■■■■ 천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군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업체로 하여금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사업현장 특성에 조화되는 조형물을 제안하도록 공고 하여 최적의 제안을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
- 그러나, 선형개선공사 등이 장기간 지연되자 ▲▲군에서는 상징조형물 설치 장소(▲▲읍→●●읍) 및 디자인(▲▲군 ■■■■ 천년 상징성→특산물 홍보) 등을 업체의 제안서 내용과 전혀 다르게 과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면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취지나 과업변경의 범위를 벗어나 불가하다고 판단됨.

- 이 건의 경우 장기간 일시정지 등 발주기관의 사유로 당초 계약의 추진할 수 없음에도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문제, 업체의 반발 등에 따라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으로 급조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므로, ▲▲군에서는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43.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20. 1. 6.)

☐ **제목 : 운동기구 물품 임차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0 ○○○○○○○○○○○○○○○○○대회 공식기구 구입 및 임차
- 공식기구 제조사/국내총판 : ●●●(◆◆ ◆◆) / (주)◆◆◆◆◆◆◆◆◆◆
- 사업량/사업비
- 구입 : 시합용 00세트 / 000백만원
 - 임차 : 연습용 00세트 / 000~000백만원

□ 신청 사유

- 2020 ○○○○○○○○○○○○○○○ 대회 추진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식 ●●기구를 일부 구입, 일부 임차하고자 함.
- 운동기구는 대회를 주최하는 ○○○○○○○○○○○○○에 공식 ●●기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식 ●●기구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올림픽 공식 인증 ●●기구여야 함.
 - 새 제품이어야 함.
 - 대회용, 연습용, 워업용 기구는 모두 같은 브랜드여야 함.
- □□□군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공식 ●●기구 일부는 구입하고, 일부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기 구입한 기구와 동일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업체와 수익계약으로 ●●기구 물품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9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5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고,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계약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하므로 「조달사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물품 계약 방법을 검토하여야 하나,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우선 검토하여 세부 규격, 기능 등에 맞는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찰 방법 등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 또한, 임차하려는 물품이 특수규격, 인증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생산자(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생산자(소지자)가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미 구매 계약된 물품과 동일한 제품을 임차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 등에 해당 된다면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군에서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임차하고자 한다면 유사한 사례와 원가 검토 등 실거래가격 등의 비교를 통한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전자문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람.

44.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20. 7. 2.)

☐ 제목 : ◆◆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사업 종자구입 관련

☐ 사업 개요

- 사업명 : ◆◆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 사업
- 사업비 : 000백만원(도비 000, 군비 000, 자담 00)
- 사업량 : ●◆◆ 중간 육성장 조성 3개소, 7ha * ha당 00백만원
- 사업내용 : ●◆◆ 인공종자 구입·살포, 중간육성장 조성
- 보조사업자 : 0명(어업인 0, 어촌계 0)

☐ 신청 사유

- 2020년 ◆◆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자 구입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3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15-1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2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본 사업은 ◆◆종자 살포 지원으로 종자산업 육성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산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시행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보조사업자인 지역 내 어업인이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이 안정된 종자공급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된 경우라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를 직접 선정하더라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군에서는 구매단가의 결정, 해당 배양장의 종자생산량 및 건강·발육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 상 절차에 맞게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5.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20. 7. 22.)

□ 제목 : 2020○○○○○○○○○ 취소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가능 여부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0○○○○○○○○○
- 기간 : 0000. 00. 00.(목)~00. 00.(수) / 0일간
- 장소 : △△군 ▲▲면 ▲▲▲로 000(△△○○○○○○○○○○○○○○○○)
- 총사업비 : 0,000백만원(부가세 포함)
- 면적 : 000,000m²(행사장 00,000m², ■■■ 00,000m²)
- 내용 : 학술행사, 연령별 맞춤 ■■■체험프로그램, 특산물관 등 운영
- 주최/주관 : 전라남도·△△군 / ○○○○○○○○○○○○○○○○○추진위원회
- 계약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신청 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2020○○○○○○○○○ 행사취소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주)◆◆◆◆에서는 2021년까지 우선협상 대상 지위 보전 유지와 기술협력에 따른 소요경비 정산과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선협상 대상 지위 보전을 요구하는 경우 지위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 주요 쟁점(상호 간의 주장)
 - (△△군) 본 행사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세계적인 재난사태로 취소 되었으며, 업체에서 2021년까지 우선협상 지위보전을 요구하나,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기술협상 단계에서 지위 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
 - (계약상대자) 코로나19 사태가 ‘특별한 사정’ 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0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2절 9-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4-가·제8절 8-가

□ 판례 (대법원 2011. 9. 29. 2011다10211 판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선정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배타적인 우선 협상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입찰 안내나 입찰서의 내용대로 직접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피선정자가 입찰안내나 입찰서의 내용대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함.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우선협상지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본 행사의 특성상 매년 주제에 맞게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관련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다는 점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고려한다면 행사대행용역은 매년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차기년도 행사 개최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용역의 입찰 취소에 따른 우선협상지위권은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입찰 취소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동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기술협상이 진행되었고, 입찰 취소에 대한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계약에 관한 사법상 법률 관계는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6.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21. 4. 13.)

☐ **제목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방식 추진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시 ○○동 0000-0번지 외 0필지(○○◆◆◆◆◆◆ 내)
- 대지면적 : 00,000㎡
- 건축규모 : 지상 0층 / 지하 0층(연면적 00,000㎡)
- 주용도 : 임대형 가공공장, R&D 지원센터, 수산물 거래소, 냉동 물류창고
- 사업비 : 0,0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9년 1월~2023년 12월

☐ **신청 사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용역은 설계공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수산식품 수출단지 신축 건축물의 용도가 설계공모방식 적용 대상과 비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설계용역 발주 방식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 **관련 법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국토교통부 의견**

- 공장·창고와 연구·판매시설이 각 용도별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혼재된 복합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 공장·창고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구·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 설계공모 우선 적용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계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적용해야 함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건축물의 설계용역은 공모방식 적용대상인 연구·판매시설의 설계 추정가격이 000백만원이므로, 공모방식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 규모는 00,000㎡이며, 하나의 건물에 ① 공모방식 적용 대상인 연구 시설, 판매시설(전체면적의 20%, 설계 추정가 000백만원), ② 공모방식 미 적용 대상인 임대형 가공공장, 냉동·물류창고(전체면적의 80%, 설계 추정가 0,000백만원) 4가지 용도가 복합되어 있음

47.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21. 8. 19.)

☐ 제목 : 체육시설 건설사업 2건 관리용역계약 통합 가능 여부

☐ 통합대상 사업 개요

구분	○○시 ㉠㉠㉠㉠ 건설사업	○○시 ●●●●●●●● 건설사업
위치	◆◆동 산000번지 일원	◆◆동 산000번지 일원(㉠㉠㉠㉠ 단지 내)
규모	000천㎡	0천㎡, 건축 연면적 0천㎡(지상 0층)
주요 시설	종합경기장·보조경기장(관람석 00,000석), 주차장(000대)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중재활치료실
사업비	000억원(국비 000, 도비 000, 시비 00)	00억원(국비 00, 시비 00)
추진 일정	공사 기간 : 2019년 12월~2023년 6월 (2021년 9월 기준 공정률 24%) ※ 관리용역 종료 시기 : 2023년 3월(예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21년 7월~10월 공사계약 의뢰 및 착공 : 2021. 12. 31. ※ 관리용역 종료 시기 : 2023년 2월(예정)

☐ 신청 사유

- ㉠㉠㉠㉠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 중(2019. 8. 22.~2023. 3. 31.)
- ●●●●●●●● 건설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 중(2021년 7월~10월)
- 시행 중인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통합(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체육시설 건설사업 2건 관리용역계약 통합 : 가능
 - 효율적인 관리 가능 : 부지 인접, 관리용역 종료 시기 2023년 2월·3월
 - 예산 절감 효과 : 7.3억원 절감(분리 발주 9.4억원, 통합 발주 2.1억원)

구분	㉠㉠㉠㉠ 건설사업 관리용역	●●●●●●●● 건설사업(○○시 신청서 첨부 자료 인용)		
		건축법의 공사 감리	관리용역 분리 발주	관리용역 통합 발주
금액	34.3억원	4.4억원	9.4억원	2.1억원

48. 분야 : 회계(계약) 분야(신청일 : 2021. 8. 30.)

☐ 제목 : 물 관련 시설 건설사업 2건 관리용역계약 통합 가능 여부

☐ 통합대상 사업 개요

구분	●●군 ●●정수장 건설사업	●●군 ●●●●지구 생활용수시설 건설사업(3개소)
위치	■●면 ■●리 일원	■●면 ■●리~■●리 일원, △△면 △△리~△△리 일원, ◇◇면 ○○리 일원
규모	정수장 신설(0천톤 처리), 상수관로 0.0km	상수관로 00km, 가압장 0개소
사업비	000억원(국비 ^{70%} 000, 도비 ^{9%} 00, 시비 ^{21%} 00)	00억원(국비 ^{70%} 00.0, 도비 ^{9%} 0.0, 시비 ^{21%} 0.0)
추진 일정	공사 기간 : 2021년 6월~2024년 3월 (2021년 9월 기준 공정률 10%) ※ 관리용역 종료 시기 : 2024년 3월(예정)	공사 기간 : 2021년 12월~2022년 7월 현재 상황 : 자재수급 준비, 현장사무실 설치 중 ※ 관리용역 종료 시기 : 2022년 7월(예정)

☐ 신청 사유

- ●●정수장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 중(2021. 6. 28.~2024. 3. 28.)
- ●●●●지구 생활용수시설 건설사업 공사 착수 예정(2021년 12월~2022년 7월)
- 시행 중인 ●●정수장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에 ●●●●지구 생활용수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추가)하여 계약을 체결 해도 되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물 관련 시설 건설사업 2건 관리용역계약 통합 : 가능
 - 효율적인 관리 가능 : 부지 인접(직선거리 20km 이내), 시행 중인 ●●정수장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료 전에 ●●●●지구 생활용수시설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료
 - 예산 절감 효과 : 5.7억원 절감(분리 발주 7.5억원, 통합 발주 1.8억원)

구분	●●정수장 이전증설 건설사업 관리용역	●●●●지구 생활용수시설 건설사업(●●군 신청서 첨부 자료 인용)	
		관리용역 분리 발주	관리용역 통합 발주
금액	24억원	7.5억원	1.8억원

49.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19. 4. 19.)

□ 제목 : ○○어촌계 가설건축물 부지 어항시설 지정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시 ○○동 0000-0번지

○ 가설건축물 현황

대지면적	지목	건축규모			구조/용도	준공일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0,000.0㎡	잡종지	0,000㎡	0,000㎡	0동	조립식구조/ 홍합간이박신장, 화장실	① 0000. 00. 0. ② 0000. 0. 00.

※ 존치기간: 0000. 00. 0.

□ 신청 사유

○ 택지개발 추진 시 ○○어촌계에 대체어항(물양장)으로 사용승인한 부지를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어항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어항시설 미지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기관 의견) 2011년 대체어항(물양장)에 ○○어촌계 홍합 가공 박신장 축조를 위한 대체 어항 사용 승인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어항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체 어항(물양장) 사용료는 「어촌어항법」에 의거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
- 「어촌·어항법」 제2조·제38조·제42조·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7조·제35조·제37조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제20조
- 「◆◆시 어항관리 조례」 제2조·제22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토지개발사업 추진 시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촌계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대체 어항(물양장) 사용을 승인한 점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시설 용도를 고려한다면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인 물양장을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항지정 및 어항개발의 필요성 검토, 관계 기관·부서 협의 등 어항시설 지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어항시설 사용 허가가 해당 어촌계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물양장 내 가설 건축물 부지의 사용료 부과(감면)를 적용할 때에는 「공유재산법」과 「어촌어항법」을 비교 검토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함께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0.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19. 6. 5.)

□ 제목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료 산정 방법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8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 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 운영 역량 제고
- 사업비 : 0,000백만원(개소당 000, 국비 00%, 도비 00%)
- 사업량 : 0개소(농업기술원, ●●군, △△군, ■■군)
 - 소유 : 부지(시장·군수), 스마트온실(전라남도지사)
 -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할 스마트 온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 신청 사유

- 시설물(비닐온실)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토지와 시설물(비닐온실)을 합산하여 산출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1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별표3
-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제28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본 사업과 같이 공유재산인 토지와 시설물을 사업대상자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의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발표된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할 대부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를 각각의 재산 가격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임대수입으로 처리하거나 관리주체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51.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19. 6. 5.)

□ 제목 : ■■ ●●지구 도시개발사업 발파암 판매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면 ◆◆리(●●), ■■동 일원
- 면적 : 000,000㎡(000,000/0.0㎡)
- 사업비 : 0,000억원(공사비 000, 보상비 000, 기타 000)
- 사업기간 : 0000. 0. 0. ~0000. 00. 00.
- 시행자 : ●●시장(구역분할 혼용방식 : 환지+수용)

□ 신청 사유

- 본 공사의 상수공, 우·오수공 터파기 시 발생하는 잔토를 현장 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잔토 대부분이 발파암(약 0만㎡)으로 현장 내 처리가 곤란하여 외부 사토를 해야 하는 실정임
- 발파암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다만, 유찰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3자(또는 도급사)에게 무대 처리토록 할 경우 제3자(또는 도급사)의 발파암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29조·제43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8조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매처분하고 그 대금을 세입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발생 토석을 다른 건설공사에 활용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제3자에게 처리(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별개로 발파암의 단위중량, 수량산출, 단가 결정 등은 재료시험과 관계 규정에 따르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52.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19. 7. 4.)

□ 제목 : 농기계종합교육장 부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처리

□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0000번지
- 매입대상
 - 토지 : 전, 0,000㎡
 - 수목 : 누에사육용 뽕나무 0,000주
- 대장가격 : 000백만원(0000년 개별공시지가 00,000원)
- 매입목적 : 농기계 종합교육장 및 실습장 건립

□ 신청 사유

-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 농기계실습장,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곤충잠업연구소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장물인 뽕나무 묘목을 보상 처리 하였음.
- 지장물로 매입한 뽕나무는 누에 사육용으로서 오디 생산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어 내부결재 후 임목죽(뽕나무)을 자체 폐기할 계획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수목의 폐기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8조
- 「〇〇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대법원 판례** (2015.4.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매입목적인 농기계종합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포함된 수목(뽕나무)을 지장물로 보상하였으므로 ㉡㉡군에서 수목을 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벌채하여 폐기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수목 및 벌채목에 대한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타당함.

53.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19. 12. 18.)

☐ 제목 : 공유재산 대부(경작)관련 시설물 보상 가능 여부

☐ 공유재산 현황

- 위치 : ○○시 ○면 ○●리 000-0
- 지목/면적 : 답 / 000㎡
- 대부면적 : 000㎡(용도 : 경작)
- 대부기간 : 0000. 0. 0. ~0000. 00. 00.

☐ 신청 사유

- 대부계약 사용 목적은 경작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대부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상금 지급 없이 비닐하우스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최근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대부한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고, 「공유재산법」 제35조에 따라 기존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에 체결된 경작 목적의 대부계약이 기간 만료되어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부지내의 시설물이 이전(철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부받은 자와 협의를 거친 후, 대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4.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20. 3. 16.)

☐ 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가능 여부

☐ 공유재산 개요

- 위치 : ●●시 ●●동 000번지 ■■■■■센터 0층
- 용도/면적 : 휴게음식점 / 00.00㎡
- 기간 : 0000. 0. 00.~0000. 0. 00.(0년)
- 사용자 : 주식회사 ○○○○○○○○
- 대부(사용)료 : 0,000천원(부가세 별도)

☐ 신청 사유

- 우리 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이후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감면 규정이 신설(0000년 00월)되어 대부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0000년 0월 계약상대방이 상기 규정들의 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계약기간 중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대부(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유재산법」 제20조·제24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17조·부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의3
-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
- 「●●시 도시재생 시설물 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받은 자가 0000년 제0차 행안부형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였다면 기체결된 계약서 상 0차년도 대부료가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일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때 부터는 개정된 감경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와는 별개로, 해당 마을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마을기업과의 향후 재계약 등을 검토할 경우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55.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20. 6. 3.)

□ 제목 : ■■개발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 처분 관련

□ 공유재산 개요

- 위치 : ○○시 ○○면 ●●리 0000-0, 0
- 건축면적 : 000m²(000m²×0동)
- 용도/구조 : 창고(통발제조시설) / 경량철골조
- 취득가격(취득일) : 00,000천원(0000. 0. 0.)

□ 신청 사유

- 공유재산(통발제조시설)을 사유지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고 설치한 후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만 이용하고 있고, 현재 시설은 노후화되었으며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어려운 산촌에 위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하며 사유지에 설치되어 매각도 어려운 여건임.
- 공유재산 철거 등 원상복구 해야 할 경우 철거는 무상으로 가능하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에 추가 예산(약 00,000천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약 0,000천원)으로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재산 예정가격 결정)을 위반하게 됨.
-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공유재산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한지와 추가 예산 낭비 없이 공유재산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유재산법」 제11조 · 제29조 · 제36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 · 제38조
-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 법제처 법령 해석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
 - ▶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으로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폐지 당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장래에 기능이 상실되고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행정 목적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공공용 재산 등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해당 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장래 활용·보존계획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에서 내부적으로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매각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나,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사유지에 건축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로서 그 건물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재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격 결정 및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등 특혜 논란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6. 분야 : 회계(공유재산) 분야(신청일 : 2021. 7. 28.)

☐ **제목 : 재난피해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 연장 가능 여부**

☐ **공유재산 개요**

- 대상 : ■■■읍 ■■■로 00길 ■■■군 ▲▲▲ ▲▲ 부지 내 독립건물
- 준공일 : 0000. 0. 00.
- 면적 : 00㎡(지상 0층)
- 용도 : 휴게음식점(커피, 음료, 간식)
- 허가목적 : ■■ ▲▲▲ ▲▲ 관람객 대상 편의 제공
- 허가기간 : 2019. 9. 28.~2021. 9. 27.(2년 연장)
※ 최초 허가기간 : 2017. 9. 28.~2019. 9. 27.
- 사용료 : 0,000천원(2017년 기준)
- 사용료 감면 : 재난(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요율 인하
 - 2020년 하반기 : 10월~12월(3개월) 감면율 30%, 000천원
 - 2021년 상반기 : 3월~5월(3개월) 감면율 60%, 000천원

☐ **신청 사유**

- ■■■군 ▲▲▲ ▲▲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휴관 상태로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취소되고 방문객이 급감함.
- 이에 ▲▲▲ ▲▲ 내 휴게음식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정상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사유로 사용기간의 연장을 요구함.
- 사용료 감면 기간을 제외한 1년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 ▲▲▲ ▲▲ 휴게시설 사용료를 2020년 하반기(10월~12월, 3개월) 30% 000천원 감면했고, 2021년 상반기(3월~5월, 3개월) 60% 000천원 감면했음.
- ■■군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휴게시설 사용료를 감면한 점은 ■■군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로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군이 ■■ ▲▲▲ ▲▲ 내 휴게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재난피해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연장 허가기간 산정 시 세무서 신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과 금년도 매출액의 자료를 비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연장 기간을 산정하시기 바람.

57. 분야 : 회계(재정) 분야(신청일 : 2021. 3. 9.)

☐ **제목 : ○○○○○시설 조성사업 손해배상액 분할징수 가능 여부**

☐ **손해배상 소송개요**

- 원고 : ■■■군
- 피고 : (주)□□□□□□, (주)■□■□■□, ■■■■■(주), (주)■■■■■■■■■■, ■■■■■(주)
- 소송내용 : 설계 오류 및 시공 과실, 감리용역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요구
- 소송 결과(대법원 2021. 1. 14.)
 - 피고는 손해배상 결정액 0,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 **신청 사유**

- 설계사 (주)□□□□□□와 감리사 (주)■□■□■□가 2021. 1. 25.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사유로 ■■■군에 손해배상액 분할납부를 요청함
- 손해배상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2조·제86조·제8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제124조
-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 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한 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액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담보 근저당 설정 등)를 우선실시 후, 채무자에게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아울러, 분할 승인으로 채무 이행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채권액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방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담당자 전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함.

58. 분야 : 회계(재정) 분야(신청일 : 2021. 8. 31.)

□ 제목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후 세외수입 처리 가능 여부

□ 신청 사유

- 「**■**■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 소재 대학교에 입학이 확정되고 **■**■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장려금을 지원, 2018. 8. 26. **■**■사랑 지류상품권 구입(2.5억원)
- 수요예측 착오로 2021년 9월 지류상품권 0.8억원만 환전 청구가 완료됐고, 1.7억원은 집행되지 않은 채 읍·면사무소와 농협에 보관 중이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현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급대상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을 위해 보관 중인 상품권 1.7억원을 환전 청구 후 군으로 귀속하여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군 **■**■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 「**■**■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6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후 세외수입 처리 가능 여부 :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음
 - 그리고 「**■**■군 **■**■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군수의 재량 사항으로 판단됨

- 현재 보관 중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환전 청구하는 것이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고, 지류상품권 외에 대학생이 선호하는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보관 중인 지류상품권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을 군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함

59. 분야 : 회계(기타) 분야(신청일 : 2020. 10. 15.)

□ 제목 : ●●면 ●●●●●● ●●●사업으로 매입 예정인 정부
양곡창고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목적 :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위치 : ●●군 ●●면 ●●리 00-0 외
- 소요사업비 : 0,000백만원(국 0,000, 군 0,000)
 - 공사비 0,000백만원, 보상비 0,0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0,000㎡, 건축물 신축 0,000㎡(0층)

□ 신청 사유

- 중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나 건축
예정 부지가 농협 소유의 토지로 양곡창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부지 매입 시 양곡창고에 대한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주요 쟁점(상호 간의 주장)
 - (●●군) 해당 사업의 지장물 보상비 확정 시 양곡창고 건물과 함께
동산 이전비를 일괄 적용하였으며, 관련 기관 질의회신 결과, 양곡창고
보관료는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인 원물에 대한 과실로써 영업
이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농협) 해당 양곡창고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영업행위에 해당 되고,
이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 주어야 함

□ 관련 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과 별도 체결한 정부양곡보관도급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양곡창고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었는지가 관건인 사항으로써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하게 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대상이 될 것이나, 해당 영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도 영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면 폐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으로 인해 실제 휴업을 한다거나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양곡창고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상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60. 분야 : 회계(기타) 분야(신청일 : 2020. 11. 27.)

☐ 제목 : ◆◆◆◆◆◆ 협의 취득 전 폐업된 상점의 영업보상 가능 여부

☐ 사업 개요

- 위치 : ●●시 ◇◇동 0가 0-0 (○○○○○○○○)
- 대지면적 : 000.0㎡(일반상업지역)
- 건축면적/연면적(층수) : 000.00㎡ / 000.00㎡(0층)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근린생활시설, 주택

☐ 신청 사유

- 2019년 4월 ○○○○○○○○에 대한 영업보상 감정평가는 이미 완료되었고, 2020년 3월까지 협의 과정 기간에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파기 및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 영업을 중단됨.
- 임차인은 소유자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고 나갈 것을 재촉하자 고령인 임차인을 대신해 임차인의 아들(●●● 거주)이 대신 정리(이사 및 폐업신고)하였으며, 시가 매입하는 거라면 그렇게 급하게 정리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 만료 기간인 2020년 8월까지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을 것이라며 영업 및 이사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영업 보상 등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 해당 상점의 영업 손실보상은 폐업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익의 손실이 발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한 해당 건물의 편입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영업 손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시행자가 협의 과정에서 보상대상자 중 해당 상점의 임차인이 배제(미통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영업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됨.
- 해당 상점을 폐업하기 이전에 휴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써 감정평가를 완료하였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휴업보상을 하였다면 해당 상점을 폐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 당시 영업 손실보상 대상임을 인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폐업한 상태로써 재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상점의 임차인과 기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2019년~2021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 발행처

- 전라남도 감사관실

◆ 발행 연월 : 2022년 7월

◆ 편집인

- 감사관 김세국
- 청렴지원관 김병중
- 컨설팅감사팀장 정부경
- 컨설팅감사팀 주무관 안춘선
- 컨설팅감사팀 주무관 이영자

◆ 문의 : 061-286-2490, 2491, 2492

- 전라남도 감사관실 컨설팅감사팀

